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현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21-17

발의연월일 : 2021년 월 일

발 의 자 : 김현희, 송영섭, 황영호, 정정희, 김용원, 송순효, 강선영, 이종숙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1년도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되고 “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”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“지급대상”, “장학금”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수정(제4조)

나. “추천” 장학금 추천 단체를 현행에 맞게 수정 (제5조)

다. “심사”, “지급시기” 조항을 현안에 맞게 수정(제6조, 제8조)

라. 그 밖의 조문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 제22조」

나. 협조부서: 자치행정과

다. 입법예고: 2021. 2. 19. ~ 2. 24.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”를 “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관련법령”을 “관련 법령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고등학생”을 각각 “대학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1명에 대하여”를 “1명당”으로, “(2분기분)”을 “(한 학기분)”으로,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한 학기분 등록금 총액에서 이미 지급된 다른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5조 중 “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강서구협의회장 (이하 “구협의회장”이라 한다)과 강서구 새마을부녀회장(이하 “구부녀회장”이라 한다)이 공동으로”를 “새마을운동 조직에서”로, “에 추천한다”를 “에게 추천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”를 “심사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7%이내”를 “7% 이내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공납금 전액으로 한다”를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장학금은 구청장이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가”를 “사람에게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지역사회발전”을 “지역사회 발전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 4. “새마을지도자”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 강서구 새마을지도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----- 사람을 ----.
제3조(지원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1. ~ 5. (생 략)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 단,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	제3조(지원) ① ----------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-----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관련 법령----------. ----------

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.	----------.
제4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에 봉사하면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와 새마을 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	제4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---------- 대학생 ---------- 대학생 ----------.
②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회(2분기분)에 한하여 1명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지도자자녀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	② ----------1명당---------(한 학기분)-한정하여----------. 다만,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한 학기분 등록금 총액에서 이미 지급된 다른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제5조(장학생 추천)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강서구협의회장 (이하 “구협의회장”이라 한다)과 강서구 새마을부녀회장(이하 “구부녀회장”이라 한다)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강서구지회장(이하 “구지회장” 이라 한다)에 추천한다.	제5조(장학생 추천) ------ 새마을운동 조직에서 ----------에게 추천한다.

제6조(장학생 선정)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,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. 1. ~ 3. (생 략) 4. 기타 유공지도자	제6조(장학생 선정) ① ---------- 심사하여 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그 밖의 -----
제7조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의 7%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.	제7조(장학생의 정원) ---------- 7% 이내----------.
제8조(장학금의 지급)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	제8조(장학금의 지급) ① ----------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 <단서 삭제> ② 장학금은 구청장이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제9조(장학금의 지급정지)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1. ~ 4. (생 략) ② (생 략)	제9조(장학금의 지급정지) ① ---------- 사람에게 -----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장학생의 의무)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,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.	제10조(장학생의 의무) ---------- 지역사회 발전----------.
제14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4조(규칙) ---------- 필요----------.

붙 임 관계 법령

❏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

현 행		개 정	
301 일반 보전금	**02. 장학금 및 학자금** 1.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(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) 가. 통·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·리장 자녀장학금 1) 적용대상 : 통·리장의 자녀 중 중,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) 지급액 : 교육부 및 시·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.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) 적용대상 :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,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) 지급액 : 교육부 및 시·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.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	301 일반 보전금	**02. 장학금 및 학자금** 1.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(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) - <u>통·리장 자녀,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</u> <u>(교육부 및 시·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)</u>